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00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정성호·김병주·김정호

박홍배 • 박희승 • 복기왕

안태준 • 이기헌 • 이병진

이연희 • 주철현 • 한정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 근거를 두고있음.

현대전이 총력전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유사시에 비정규전이나 후 방작전 등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4. 7 국방정책자료집 및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병력구조가 상비병력 14%(50만여 명), 예비병력 86%(310만여 명)로 편성되어 있어 수준 높은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임.

그러나 특전예비군은 2011년에 창설된 이후 그 규모가 2014년에 1,200여 명에서 2024년 현재는 770여 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이 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육성하도록 하여 특전예비전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등).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중 "예비군"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특전예비군에 우선 편성될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의 특전예비군을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특전예비군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4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
	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
	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
	을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육군특수전사령
	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은 특전예비군에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	비군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예비군 편성	<u>⑤</u> 제2항 및 제4항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u>⑤</u> ~ <u>⑨</u> (생 략)	<u>⑥</u> ∼ <u>⑩</u> (현행 제5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

원 책임) ① (생 략)	원 책임)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그 관할구역의 특전예
	비군을 우선적으로 육성ㆍ지원
	<u>하여야 한다.</u>
<u> <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특전예비군
	<u>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②</u> · <u>③</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